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2014년 장애인 포용법)의 법률 검토

토론서

2020년 1월



목차

1 저희는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1.1 현재 NSW에서 진행 중인 장애 복지 검토 및 개혁	3
1.2 본 법률 개요	5
1.3 의견 개진 방법	6
2 법률 시행 배경 및 NDIS	8
2.1 초기 논의 및 법률 개시	8
2.2 본 법률 및 UN 협약	8
2.3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9
3 본 법률의 성취 목표	10
4 본 법률 상 장애인 권리	11
5 NSW 장애인 포용 계획	13
5.1 State Disability Inclusion Plan	13
5.2 NSW Disability Inclusion Plan 검토	14
5.3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	15
6 Disability Council NSW	18
6.1 Disability Council이 하는 일	18
6.2 Disability Council의 구성원	19
7 지원 및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20
7.1 제공기관들이 일련의 표준을 준수함을 확인	20
7.2 지원 및 서비스	20
8 기타 조항	23

1

저희는 Disability Inclusion Act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 (본 법률)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이전의 Disability Services Act 1993을 대체했습니다.

저희(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는 Families, Communities and Disability Services부 장관 Gareth Ward MP 의원을 대신하여 본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검토 목적은 해당 법이 본래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를 통해 또한 본 법률이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법률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포용과 참여를 증진합니다. 현재 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부 장애 복지 계획 (State Disability Plan) 개발
- 정부 단체들이 장애인 포용 시행 조치 계획 마련, 및
- Disability Council NSW에서 장애인들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을 지원.

1.1 현재 NSW에서 진행 중인 장애 복지 검토 및 개혁

NSW Ageing and Disability Commissioner

NSW Ageing and Disability Commissioner (NSW 고령자 및 장애 복지 위원회)는 NSW 주의 모든 고령자와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당당함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고령자들과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정부 및 비정부 서비스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학대, 무시 혹은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해자는 친구, 가족 구성원, 이웃 혹은 지역사회의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NSW 장애복지옹호기관 (Disability Advocacy) 검토

NSW Ageing and Disability Commission은 주 전역의 장애복지옹호기관의 목적과 기능 및 향후 필요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심사는 NSW 전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및 대표 단체를 포함하여 독립적 전문 옹호 기관에 대하여 이같은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해 또한 옹호 지원 자금 및 서비스들이 전달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권고 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NSW 주정부 내의 고용 및 포용

장애인들은 사회적 및 경제적 생활에 완벽하게 융합하는 데 있어 난관에 부딪힙니다. NSW 공공 분야에서 장애인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인력 참여 기회를 최대화한다면, 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고용 기회 및 이에 수반되는 금전 및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NSW주는 NSW 공공 분야의 장애인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전념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정부 분야 역할을 5.6%로 확보하는 등, 핵심적 다양성 목표들을 통하여 현 총리의 최우선 과제인 세계 수준의 공공 서비스 보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NSW 정부는 팀과 직장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인력에 장애인들의 전면적 참여를 장려하고 업무 도중에 장애를 얻을 수도 있는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적 관행 및 행동 지원

NSW주는 NSW에서 운영되는 NDIS 등록 제공 기관들에 대한 제한적 관행 승인 절차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적 관행 승인 정책 (Restrictive Practices Authorisation Policy) 및 제한적 관행 승인 절차 가이드(Restrictive Practices Authorisation Procedural Guide)를 최근 개발하여, NSW의 제공 기관들에게 제한적 관행 사용의 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그들의 책임 사항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품질, NSW 주 전역에서 보호조치 및 보고 제도에 관한 설명회들이 개최되었습니다.

NSW주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전문 장애 복지 서비스에 대한 NSW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애인들에 대한 개별 지원을 위해 현재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국가장애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연방 정부와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는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대한 상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NSW주에서의 전면 제도로의 전환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NSW주에서의 전면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nformation, Linkages and Capacity Building - ILC (정보, 링크, 능력 개발) NDIS

ILC는 전적으로 포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과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NDIS의 다른 내용들과는 달리, ILC는 개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LC는 모든 장애인들과 그들의 보호자 및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Royal Commission into Violence,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2019년 4월 5일, Scott Morrison MP 총리와 Paul Fletcher MP 가족 및 사회 서비스 (Families and Social Services) 전직 장관은 Royal Commission into Violence,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를 조사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조사의 범위에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의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학대, 방치 그리고 착취들이 포함됩니다.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National Disability Strategy(국가장애복지전략)은 연방 정부와 주 및 테리토리 정부가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장애를 가진 호주인들 및 그 가족과 보호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10개년 국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전략에는 2008-9년 National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rer Council에서 실시하고 Shut Out: The Experi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 Australia (2009) 에서 보고된 광범위한 협의에서 나온 조사결과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2020년 말에 종료되며, 호주 전역의 정부들은 2020년 이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첫 단계는 2019년 4월과 6월에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초에 추가 협의가 실시될 예정이며, 저희는 향후 전략에 대한 우선 순위와 시행 조치들에 대하여 모든 이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장애 정책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한 독자적 평가를 통해 현 정책의 많은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략의 전반적 원칙과 목표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 평가는 또한 특히 이 전략이 시행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나타냈습니다.

신규 전략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현재 가능한 기회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나타날 수 있는 기회들도 기반으로 합니다. National Disability Agreement의 Productivity Commission's Review의 조사 결과도 그 고려 사항의 일부입니다.

1.2 본 법률 개요

본 법률이 지향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장애인의 평등과 포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법률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일관되는 목표와 원칙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 법률은:

- 장애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 정부 기관들이 장애 포용 시행 조치 계획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Disability Council NSW에서 계속하여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것을 공고히 합니다.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이 시행되는 동안 장애인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도록 공고히 했습니다.

이 토론서에서 본 법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토론서의 내용

본 토론서는 검토 절차의 첫 부분입니다. 이는 본 법률의 각 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가 저희에게 의견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질문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위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애 복지 분야에는 현재 수 많은 포용 활동들이 있습니다. 본 토론서는 특히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 의견 개선 방법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본 법률이 포용성 있는 지역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실히 반영하도록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의견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 장애인
- 보호자
- 장애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 지역사회 구성원
- 지역 카운슬.

온라인 설문조사

DCJ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작성하시어, 본 토론서의 질문들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서면 제출

본인의 의견을 서면 제출을 통하여 보내고자 하시면, NSWDIP@facns.nsw.gov.au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을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Locked Bag 4028, Ashfield, NSW 2131.

워크샵

저희는 또한 워크샵 및 원탁 토론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DCJ 웹사이트에서 이에 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저희 워크샵에서의 모든 설문조사 응답과 서면 제출 그리고 의견들은 2020년 3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되어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어떻게 다루어나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고려되고 검토 보고서에 공지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본 법률의 51절에 의거하여 NSW 의회에서 심의에 부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모든 공식 의견들은 저희 공공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입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제출하신 의견의 어떤 부분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이유를 꼭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에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비밀유지 약관은 공식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저희는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귀하의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보장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때로 법률과 공공 이익에 의거하여 누군가에게 귀하의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Access) Act 2009에 의거하여 정보 요청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평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참여 방법에 관해서는 NSWDIP@facets.nsw.gov.au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02 9716 3429번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법률 시행 배경 및 NDIS

2.1 초기 논의 및 법률 개시

NSW 전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본 법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2011년 Living Life My Way 협의들로 시작되었습니다. 4천명이 넘는 개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3년 초에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Disability Services Act 1993 (NSW)의 검토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나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64건의 서면 제출도 접수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저희는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Disability Inclusion Bill 2014 (NSW)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90개 이상의 서면 제출을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자:

- 장애인 및 그 가족들과 보호자
- 최고 기관들
- 서비스 제공기관
- 기타 단체들.

이 협의 과정 동안, 저희는 신규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은 권리 기반의 포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본 법률은 더욱 융통성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접근 방식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자신들의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2 본 법률 및 UN 협약

2008년 호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협약)을 준수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UN 협약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취합니다.

본 법률은 NSW주의 장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UN 협약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본 법률은 UN 협약에 정의된 ‘장애’에 대한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¹ 정의된 ‘장애’에는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혹은 감각적 장애로 인해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여 다른 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회에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됩니다.²

¹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조.

²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 7절(정의).

2.3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NDIS는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 2013 (Cth) (NDIS Act)에 의거하여 수립됩니다.

NDIS 법률은 자격이 되는 장애인들에게 스스로의 필요와 목표를 바탕으로 개별적 재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적 계획을 통해 자신이 받는 장애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법률에는 품질 기준 및 보호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장애 복지 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NDIS에 등록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NDIS 법률에 의거하여 또한 시행과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를 설립하였습니다.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에서는 호주 전역에서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일관되도록 공고히 합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NDIS는 2020년 중순에 시행 예정인 서호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서 전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자로, NSW주의 106,819명의 장애인들이 승인된 계획 하에서 NDI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본 법률의 성취 목표

본 법률의 3절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권리 행사를 촉진해야 할 의무를 지님을 인정한다.
- b) 장애인들의 독립과 사회적 및 경제적 포용성을 증진한다
- c)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지원과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에 있어 선택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d)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 e)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지지한다.
- f)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으로 전환하는 과정 및 그 이후의 주 정부의 책임에 대비한다.

이는 존엄권, 존중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선택권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NDIS로 인해 일부 목표들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NDIS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NSW의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 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제공을 규제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의 품질 및 보호 체계들을 관리합니다.

질문 1과 2는 본 법률의 목표와 원칙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이는 본 법률의 첫번째 부분으로 장애인들의 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질문 1과 2는 모든 주요 요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질문 1: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의 3절에 설명된 목표들에 대해 (만약 있다면) 어떤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목표에 있어 귀하께서 추가하기를 원하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4

본 법률 상 장애인 권리

본 법률의 4절에는 장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하는 원칙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 개인으로서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한다
- 사회적 및 경제적 생활에 참여 및 공헌하며,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데 지원을 받아야 한다
-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성별적, 생식적, 감정적 그리고 지적 역량을 인식한다
- 지역사회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능력의 최대 범위까지 스스로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위험요소가 수반된 결정 포함)을 내린다.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그들이 도움을 원하거나 요청할 경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그들의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 연령, 성별, 성적 취향 및 종교적 믿음을 존중한다.
- 그들의 사생활 및 비밀이 존중 받도록 한다
- 방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한다
- 그들의 장애 및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불만 사항을 피력한다
- 장애인들의 생활에서 가족, 보호자 및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역할과, 가족, 보호자 및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 사항과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 장애인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능력, 힘, 목표 그리고 필요사항들을 존중한다.

특정 그룹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본 법률의 5절은 특정 그룹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필요 사항을 인정하는 추가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 소수 문화 및 언어 그룹
- 여성
- 어린이.

적합한 사람들이 정책을 따르도록 확인

6절에 의해 본 법률에 적합한 일을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기타 단체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장애 포용 시행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기관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질문 2:

본 법률의 4절과 5절의 일반적 원칙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현재의 관행과 정책을 지도하는 원칙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까?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추가되어야 하는 원칙들이나 혹은 없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까?

5

NSW 장애인 포용 계획

5.1 State Disability Inclusion Plan

본 법률의 10절과 11절의 일환으로, NSW 정부는 4개년짜리 State Disability Inclusion Plan (주정부 장애인 포용 계획)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률에 의하면 계획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해 전체 정부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 서비스 및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³

[NSW Disability Inclusion Plan](#) (NSW DIP)은 2015년 2월 26일 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입니다. 이 계획은 이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이 계획은 호주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및 UN 협약 상의 의무들과 일관 되어야 합니다. NSW DIP는 장애인들과 NSW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규정한 4가지 조치 영역들에 중점들 둡니다. 이 조치 영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긍정적인 지역사회 태도와 행동 발전
2. 살기 좋은 지역사회 창출
3. 의미 있는 즐거움에의 접근성 지원, 및
4. 더 나은 시스템과 절차들을 통해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NSW DIP 상의 신규 계획 포함 내용:

- ABC TV를 위한 Employable Me 시리즈
- 직원들에 대한 훈련 패키지 및 인식 운동
- 포용성 있는 투어리즘 전략
-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 및 보조금
- 고용주 및 근로자 네트워크
- 과정을 이끌어 갈 신규 위원회, 계획 및 협정.

³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 10절

5.2 NSW Disability Inclusion Plan 검토

2018년 6월, 저희는 Sax Institute에 첫 4개년 기간 이후 NSW DIP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Sax Institute는 시드니 대학교의 Centre for Disability Policy and Research와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한 것은 NSW DIP에서 설정된 목표들이 다음 사항에 대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 포용성 있는 지역사회 건설
- 주류 서비스 및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검토의 일환으로 저희는 기존 서류들을 살펴보고 15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포함 대상:

- NSW 정부 기관
- 지방 카운슬
- 최고 기관들
- 지역사회 단체
- 장애 분야 단체
- 장애인.

검토를 통해 NSW DIP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NSW 정부 기관 및 지방 카운슬 전역에서 더욱 나은, 그리고 더욱 일관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 보고서 및 그 핵심 조사 결과는 NSW 의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 법률은 NSW주가 State Disability Inclusion Plan를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지의 여부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질문 3:

State Disability Inclusion Plan과 관련된 조항들이 여전히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주정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3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

본 법률의 12절은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 (DIAP)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화합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공 기관’인 오직 정부 기관들만이 DIAPs를 개발하도록 요구됩니다. 공공 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획들은 NSW DIP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들은 장애인들을 위하여 다음에 대한 접근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들이 취해야 할 대책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일반적 지원 및 주류 서비스
- 특정 지원
- 지역사회 내의 건물, 시설 및 정보
- 고용 기회

14절은 DIAPs가 올바른 우선 사안들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장애인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DIAP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본 법률의 7절에는 공공 기관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부처 - 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 1부, 부칙 1. 현재 8개의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 지방 카운슬
- Disability Inclusion Regulation 2014에 규정된 단체들:
 - Australian Museum Trust
 - Destination NSW
 -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 Office of Finance and Services.
(유의: Office of Finance and Services는 현재 정부 부처 내에 속해있으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5(d)절은 중복적입니다.)

모든 NSW 정부 부처들은 2015년 12월 1일까지 각자의 DIAPs를 마련하도록 요구되었으며, 모든 지방 카운슬은 2017년 6월 1일까지 각자의 DIAPs를 마련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부처들로 간주되지 않는 기타 기관들은 DIAPs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대상:

- Institute of Sport
- TAFE NSW
-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DIAPs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 포용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Sax Institute의 NSW DIP 보고서에서 보여집니다.

DIAPs의 순조로운 진행 확인

13절에 따르면, 공공 기관들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들의 DIAPs 진행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그들의 연간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13절에 의거하여,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서 DIAPs의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

NSW DIP와 마찬가지로 모든 DIAPs는 4년마다 한번씩 검토되어야 합니다. 14절은 더 나아가 DIAPs를 검토함에 있어 각 공공 기관은 장관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유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4, 5, 6, 7 및 8은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 중 장애인들의 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들과 지방 카운슬이 자신들이 하는 업무를 문서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질문 4:

Sax Institute의 보고서는 NSW 정부 기관들 및 지방 정부의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 (DIAPs)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본 법률이 단지 NSW 정부 기관들과 지방 정부 DIAPs 이상의 것들을 다루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단체들이 DIAPs를 마련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5: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가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 사회 참여와 포용 증진 달성에 효과적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포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6:

기관들이 자신들의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약 있다면)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들이 계획의 초안을 만들기 전에 어떤 단계들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7: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에 포함된 요소들이 여전히 적합한지, 혹은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없애거나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질문 8:

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s의 보고 요건이 충분합니까?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보고해야 하며 누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Disability Council NSW

6.1 Disability Council이 하는 일

Disability Council NSW은 NSW주에서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최고 단체입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Families, Communities and Disability Services 장관에게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협의회는 Community Welfare Act 1987에 따라 발족하였으며, 현재 법률 15절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⁴

본 법률에 의거, Disability Council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⁵:

-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과 관련된 정부 정책 시행의 관리 감독
- 장애인들과 관련된 신흥 사안들을 장관에게 조언
- 지역 사회의 장애인 포용 촉진
-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지역사회 인식 고취
- 장애인들 및 기타 최고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기, 그리고 장애인들과 관련된 사안들에 관한 리서치 수행
- 공공 기관 및 장관에 DIAPs의 내용 및 시행 관련 조언
-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조언 요청
- 장관이 요구한 정보를 포함하여, 장관에 그 역할 수행에 관하여 보고

질문 9, 10, 11은 Disability Council NSW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카운슬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카운슬의 구성원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질문 9:

Disability Council의 역할이 여전히 적절합니까? 협회를 더욱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협회에 적용되어야 할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을까요?

⁴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15절.

⁵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17절 및 19절.

질문 10:

NSW의 NDIS 시행이 Disability Council의 업무에 (혹시 있다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재집중되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6.2 Disability Council의 구성원

Disability Council은 8-12명의 일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협의회는 과반수는 장애인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적절한 자격 사항 및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역할 연한은 최대 4년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1년동안 임원 직책을 보유합니다. 모두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구성원들은 주지사가 임명(해임)해야 합니다.⁶ 이는 Families, Communities and Disability Services 장관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만약 기존 구성원인 경우)은 장관에 의해 임명됩니다.⁷

질문 11:

Disability Council NSW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한 조항은 여전히 적절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회원 자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합니까?

⁶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16(1)절 및 부칙 1, 4(2)항.

⁷ Disability Inclusion Regulation 2014 (NSW) 14항.

7

지원 및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본 법률의 4부와 5부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의 재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NSW주에 NDIS가 전면 시행될때까지 오직 단기적입니다.

7.1 제공기관들이 일련의 표준을 준수함을 확인

본 법률의 4부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 단체 시설 및 센터 기반 임시 간호를 위한 장애 복지 서비스 표준 및 시설 표준을 장관이 규정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 복지 서비스 표준은 Disability Inclusion Regulation 2014의 부칙 1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 표준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은 NSW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장애 복지 서비스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NDIS 이행 표준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는 현재 NDIS 지원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규제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등록된 제공 기관들이 NDIS 이행 표준을 준수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법률에 제정된 장애 복지 서비스 표준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NDIS 이행 표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7.2 지원 및 서비스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의 장관은 ‘타겟 그룹’의 개인에게 서비스, 지원 및/또는 개별화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법률 5절의 일환입니다.

장관은 또한 ‘자격 있는 단체들(eligible entities)’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단체들이 ‘타겟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본 법률 29절의 일환입니다.

‘타겟 그룹’이란 무엇인가요?

‘타겟 그룹’의 정의는 NDIS 자격요건에 근거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 지적, 인지적, 신경학적, 정신적, 감각적 혹은 신체적 장애, 혹은 이 중 두가지 이상의 장애 보유, 및
-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 생활에서의 기능 능력이 현격히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및
- 다른 이들보다 때로 더 많은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자격 있는 단체들(eligible entities)’이란?

‘자격 있는 단체들’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가 포함됩니다.

- 정부 부처 및 기관
- 지방 카운슬
- 회사 및 법인체(비정부 단체 포함)
- 개인사업자 (sole traders)
- 합명회사 (partnerships)
- 규정에 제시된 기타 단체들

일부 ‘자격 있는 단체들’을 위한 재정 지원 조건

‘자격 있는 단체들’을 위한 재정 지원에는 일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품질 관리 매커니즘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혹은 형편없는 서비스와 학대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조건 포함 내용:

- 단체들은 본 법률 4부의 장애 복지 서비스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 특정 근로자, 자원봉사자 및 임원들에 대한 정직성 여부를 실시한다
- 재정지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고지한다

본 법률의 33절 및 34절에 의거하여, 장관은 재정 지원을 일시 정지 혹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재정 지원 유예 혹은 종료로 불립니다. 34절에는 NDIS 시행으로 인하여 장관이 재정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⁸ 이러한 결정의 검토는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의해 실시됩니다.⁹

⁸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 34(1)(b)절.

⁹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 35절.

NDIS가 임시 보호 체계를 대신합니다.

NDIS는 NSW 정부에 의한 장애 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관리와 재정지원을 대체했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1일 개시되어, NDIS가 NSW에서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은 2018년 7월 1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본 법률상 규정된 임시 보호 조치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공 기관이 NSW주의 NDIS에 등록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근로자 심사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신규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Worker Checks) Act 2018 (NSW)에 의거하여 NSW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¹⁰ Worker Checks Act에 의하면, 모든 등록된 제공기관들은 그들의 직원들에 대하여 NDIS Worker Check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12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 부분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현재 NDIS를 통해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들을 고려할 때, 이 절들의 어떤 부분들이 신규 법률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까?

질문 12:

NSW주의 NDIS 시행 이후, Disability Inclusion Act 2014의 4부 및 5부가 (만약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계속 보유해야 할 요소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¹⁰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Worker Checks) Act 2018 (NSW)은 2018년 11월 28일에 개시되었습니다.

8

기타 조항

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여러 추가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 본 법률에 의거한 책임 위임 - 이는 오직 장관들만 할 수 있음
-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일은 위법으로 간주됨
- 본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선의로 행한 모든 사안이나 행동들에 대해 면책 보호
- 본 법률에 의거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제공.¹¹

질문 13:

본 법률에 관하여 귀하께서 제기하고자 하는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¹¹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NSW) 42-51절.